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와 법적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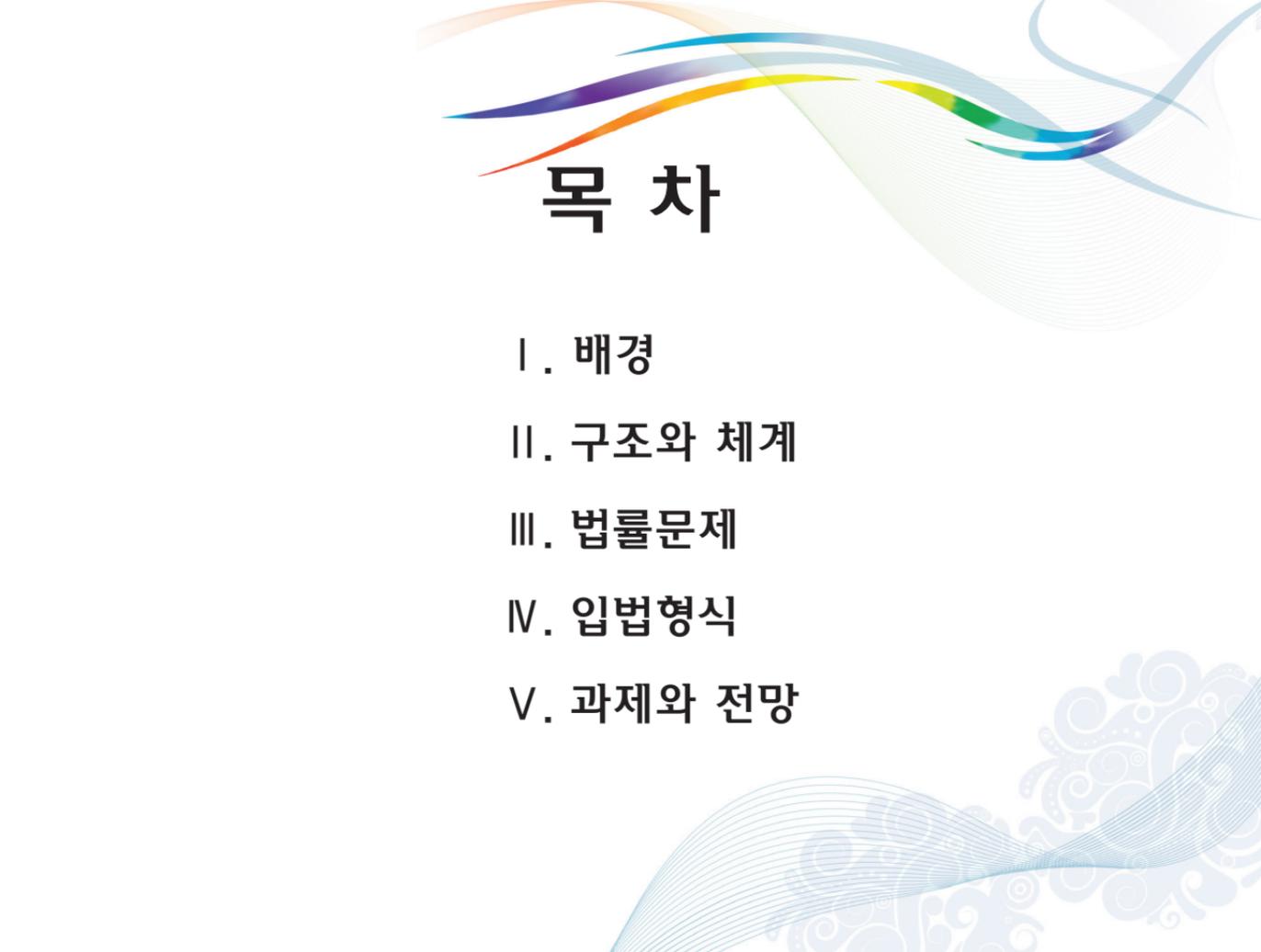
한국금융학회

2018. 10. 17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배경
- II. 구조와 체계
- III. 법률문제
- IV. 입법형식
- V. 과제와 전망

I. 배경

- 그룹위험을 반영한 금융그룹 자체에 대한 금융감독은 위험기초규제의 당연한 과정이며 국제적 추세
 - 금융지주회사법은 그러한 취지의 입법사례
-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법제화를 논의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에 근거한 현행 모범규준과는 법적 쟁점이 차별화
 - 모범규준은 특히 상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취하지 않는 금융그룹을 포함한 일반적인 금융그룹규제법이 없는 상황임을 전제
 - 현행 모범규준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가정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함
- 입법내용과 형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입법내용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형태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아닌 금융그룹 규제의 정합성 유지 여부 등으로 구분됨
 - 입법형식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II. 구조와 체계

1.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를 목적(제1조)
- 금융회사로 구성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대상
 - 금융그룹으로서의 규제대상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으로 규제
 -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 금융지주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
 - 경영관리
- 그룹단위의 위험인식과 관리체계의 도입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위험 전이의 차단체계 구축

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2018

-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
- 금융그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2조 3호)
 - 복합금융그룹을 대상
- 대표회사
 - 원칙적으로 금융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6조 2항)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2조 2호)
 - 대표회사의 업무(7조 1항 1호-4호)
 - 1. 그룹 위험관리정책, 그룹 위험관리기준 및 그룹 위험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 2.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 3. 보고·공시 등에 관한 업무
 - 4. 그 밖의 부수 업무
- 그룹단위의 위험인식과 관리체계의 도입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위험 전이의 차단체계 구축

3.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의안번호 14125,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통합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1조)
- 금융그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2조 3호)
 - 복합금융그룹일 것
- 대표회사
 - 원칙적으로 금융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7조 2항)
 -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2조 2호)
 - 대표회사의 업무(8조 1항 1호-4호)
 - 1. 그룹 위험관리정책, 그룹 위험관리기준 및 그룹 위험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 2.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 3. 보고·공시 등에 관한 업무
 - 4. 그 밖의 부수 업무
- 그룹단위의 위험인식과 관리체계의 도입
-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위험 전이의 차단체계 구축

Ⅲ. 법률문제

1. 서언

■ 입법상 고려사항

- <1> 상법상 개별회사주의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 기업집단의 그룹위험
 - 적용대상그룹의 규정
- <2> 금융그룹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체계
 - 대표회사의 권한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대표회사의 선정
- <3> 형법상 배임죄
- <4> 금융/비금융계열사간 위험분리



2. 상법상 개별회사독립의 원칙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그룹이익을 전제

- 모범규준 제7조(대표회사의 업무 등) ③ 대표회사의 이사는 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그룹 위험관리정책)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전경영의 확보)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제12조(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① 금융그룹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① 금융그룹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하여야 한다.

나.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의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금융그룹을 전제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
 -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
 -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이익에 대한 고려 없음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 등 제한적 권리 인정

- 그룹이익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판례는 부실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벌

-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다. 금융규제를 통한 회사법 원리의 보완 또는 대체

- 금융그룹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룹이익이나 그룹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가?
 - 국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갖추어야
 - 상법상 기업집단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자본의 이중계상 등의 문제가 금융그룹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남
 - 별도의 입법없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개별회사독립의 원칙이 아닌 그룹이익과 그룹위험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 현행 모범규준은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에 근거하여 법적 쟁점이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
 - 제20조(규준의 이행) 금융그룹은 이 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개별회사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한 보완적 규제로서의 그룹감독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룹이익 보다는 그룹위험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체제
- 금융규제를 통한 회사법 원리의 보완 또는 대체입법
 - 금융시스템위험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법상 일정한 범위의 공동위험그룹을 그룹규제대상 금융그룹으로 규정
 - 입법을 통하여 해당 금융그룹의 소속금융회사 이사들에게 그룹위험을 고려할 의무를 부여

라. 적용대상그룹의 규정

■ 금융그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모범규준 2조 3호)
- 복합금융그룹
 - 다음 중 2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모범규준 2조 4호)
 - 가. 여수산업
 - 1) 은행업 2)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3) 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4) 여신전문금융업 5) 대부업(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한정)
 - 나. 금융투자업 다. 보험업
- 감독대상그룹의 지정
 - 금융위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모범규준 5조 1항)
 - 1. 복합금융그룹에 해당
 -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
 - 3. 금융그룹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은 제외)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
- Cf. Joint Forum(2012) a financial conglomerate
 - “any group of companies **under common control or dominant influence**, including any financial holding company, which conducts material financial activities in at least two of the regulated banking, securities or insurance sectors”
 - EU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 Art 2(12) “group” shall mean a group of undertakings, which **consists of a parent undertaking, its subsidiaries and the entities in which the parent undertaking or its subsidiaries hold a participation, as well as undertakings linked to each other by a relationship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2(1) of Directive 83/349/EEC**;



〈1〉 소속금융회사간의 지분관계는 불문

- 금융그룹으로 인식하는 것의 상법상 의의?

〈2〉 최상위자가 비금융회사나 외국인인 경우?

- EU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2002, Art 18 Parent undertakings outside the Community
 1. Without prejudice to the sectoral rules, in the case referred to in Article 5(3), competent authorities shall verify whether the regulated entities, the parent undertaking of which has its head office outside the Community, are subject to supervision by a third-country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equivalent to that provided for by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regulated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5(2).



3. 금융그룹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체계

가. 기업집단의 관리·운영과 친회사이사의 의무의 내용과 친회사이사와 자회사이사의 관계

- 상법상 특별한 규정 없음
-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특별한 규정 없음
 - 그러나 금융그룹의 경우 그룹단위의 위험인식이 불가피
- 입법적 해결 필요
 - 다만 상법상 기업집단법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준하여 구성할 필요

나. 대표회사의 선정

■ 모범규준상 원칙적으로 최상위금융회사

- 최상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2조 2호)

■ 예외적으로 대표회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6조 2항 단서)

- 1. 금융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2. 최상위 금융회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금융그룹이 최상위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에 이를 요청하는 경우
- Cf. Joint Forum(2012) "Head" or "Head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or group)"
 - unless otherwise specified means "the entity which controls or exerts dominant influence over the financial conglomerate (the head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may be the ultimate parent, or may be the head of a financial conglomerate that is a subset of the wider group)"

〈1〉 대표회사와 그 소속 금융회사의 지분관계?

- 대표회사와 그 소속 금융회사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대표회사의 법적 지위?
 - 상법상 대주주의 업무지시권?
- 대표회사와 그 소속 금융회사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회사의 법적 지위?

〈2〉 대표회사를 비금융회사로 할 수 있는지?

- 금융규제의 적용범위
- 은행법 등 금융규제법상 대주주규제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지
- 영국은 비규제대상 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 PRA, Statement of policy on the use of the power to direct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 April 2013;
 - FCA, statement of policy on the use of the power to direct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 March 2013

〈3〉 최상위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대표회사의 지정방법?

- 영국은 중간상위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참고〉 영국

1. PRA, Statement of policy on the use of the power to direct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 April 2013

- Parent undertaking must be a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of a 'qualifying authorised person' 3. A parent undertaking is a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of a 'qualifying authorised person' under section 192B FSMA, if:
 - (a) it is the parent undertaking of a 'qualifying authorised person' (a 'qualifying authorised person' being a UK-incorporated body corporate that is an authorised person, and is either a PRA-authorised firm or an investment firm);
 - (b) it is incorporated in the United Kingdom or has a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 (c) it is not itself an authorised person,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 or recognised clearing house; and
 - (d) it is a financial institution of a kind prescribed by the Treasury by Order.
 -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Prescribed Financial Institutions) Order2013)
 - Insurance holding companies
 - Financial holding companies
 - Mixed holding companies
- Annex 2 Non-exhaustive list of possible directions which the PRA may consider making Directions which may be made by the PRA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 requirement to meet specific prudential rules applied at the consolidated level.
 - A requirement to improve the system of governance or controls at group level and/or in relation to subsidiary undertakings (including non-UK subsidiaries) where this is necessary for effective consolidated supervision.
 - A restriction on dividend payments, or other payments regarding capital instruments, in order to retain capital in the group.
 - A requirement to move funds or assets around the group to more appropriately address risks.
 - A requirement for the group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make it more supervisable.
 - A requirement to stop or impose restrictions on an acquisition or divesture (taking account of any potential conflict with takeover rules).
 - A requiremen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service is provided between relevant group entities.
 - A requirement to include entities (including shadow banking entities, where appropriate) in consolidated calculations.
 - A requirement to raise new capital.
 - A requirement to take steps to facilitate the removal from office of directors of the parent undertaking who do not meet the PRA's expectations as regards being fit and proper to direct a holding company.
 - A requirement to remove barriers to resolution.
 - A requirement to issue debt suitable for bail-in.



2. FCA, statement of policy on the use of the power to direct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 March 2013

- A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is defined under the Act as a parent undertaking²³ of a qualifying FCA regulated entity that is:
 - a body corporate incorporated in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or has a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 not itself an authorised person, a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 or a recognised clearing house; and
 - a financial institution of a kind prescribed by the Treasury by order.
- This definition is expected to cover any UK incorporated unauthorised financial parent undertaking in an ownership chain, even if that undertaking is not itself at the head of the ownership chain. In general, the FCA would consider action to be most effective when taken in relation to the ultimate parent undertaking at the head of the ownership chain, as that is usually where the majority of the power to direct and control the group resides.
- However, where the ultimate parent undertaking is not a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under the Act (for example if the group is headed by a non-UK or non-financial entity), then the FCA may consider that use of the Power of Direction over another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in the ownership chain may still be helpful in addressing group risks on a more regional or local level.
- The FCA will only have powers over the UK parent undertaking and therefore may also consider taking action in relation to an intermediate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where the FCA regulated entity is headed by a third country parent. There may be other circumstances to take action in relation to an intermediary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 for example, if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powers of the ultimate parent undertaking in its constitution, if the ultimate parent undertaking fails to act, or if action is to be taken in relation to the immediate parent of the firm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re are distinct sub-groups within wider groups).
- Content of Directions
 - 17. A direction, specified in section 192D(1) of the Act, may require the parent undertaking:
 - a) to take specified action; or
 - b) to refrain from taking specified action.
 - 18. The FCA would issue a direction designed to bring the FCA regulated entity and the group back into compliance with its regulatory requirements or to prevent the parent undertaking from taking action which may lead to disorderly failure of FCA regulated entities or the FCA regulated entity's group.
 - 19. A requirement may be imposed by reference to the parent undertaking's relationship with:
 - a) its group; or
 - b) other members of its group.



4. 계열사간 지원행위

- 특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인정할 경우 내부거래나 신용공여에 해당할 가능성
 - A restriction on dividend payments, or other payments regarding capital instruments, in order to retain capital in the group.
 - A requirement to move funds or assets around the group to more appropriately address risks.
 - A requirement for the group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make it more supervisable.
 - A requirement to stop or impose restrictions on an acquisition or divesture (taking account of any potential conflict with takeover rules)(BOE/PRA, Statement of Policy The power of direction over qualifying parent undertakings April 2013)
- 입법을 통한 법적 근거의 확보 필요성



5. 형법상 배임죄

- 그룹위험과 개별회사독립의 원칙의 관계
- 그룹위험을 고려할 판단을 배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
 -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
-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하여 그룹위험과 금융그룹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 입법상 소속금융회사 이사의 그룹위험 고려의무와 대표회사의 지정 및 업무권한이 명시될 경우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6. 금융/비금융사간 위험차단

■ 모범규준상 위험전이방지체계 구축의무

- 제13조(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① 금융그룹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하여야 한다.
- ② 금융그룹은 제1항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익스포져
 2. 소속 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소속 비금융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내부거래 비중
 3.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적정성
 4. 소속 비금융회사의 대외 평판위험 등 기타 운영위험

■ 금융과 비금융그룹의 분리 및 위험차단벽의 설치

- 계열분리명령제도 논의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여 준수 강제하는 방안

IV. 입법형식

1. 모범규준의 한계

- 모범규준은 comply or explain
 - 제20조(규준의 이행) 금융그룹은 이 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모범규준의 법적 효력
 -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범규준에 반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 34526(반소) 판결
- 상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



2. 입법내용

[제1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

[제2안] 금융지주회사 아닌 금융그룹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 고려사항 : 금융지주회사형태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아닌 금융그룹 규제의 정합성 유지 여부



3. 입법내용

[제1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하는 방안

- 특별법 제정의 부담을 절감
-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일적 감독
- 비금융지주회사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특칙과 지주회사규정의 준용

[제2안] 특별법 제정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인 금융그룹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 간의 규제의 형평성, 동일한 기능에 대한 동일한 규제에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

V. 과제와 전망

- 금융규제목적상 금융그룹통합감독도 상법상 회사법원칙을 준수하면서 수립되는 것이 타당
 -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부분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
 - 현행 상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
- 그러나 적용대상 금융그룹의 정의, 그룹위험의 인식, 대표회사의 선정과 권한, 대표회사 이외의 소속금융회사 이사의 개별소속회사 주주에 대한 의무 등이 반영되어야
- 다만 금융규제목적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상 회사법원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규칙을 금융규제법상 제정하는 것은 가능